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 명문화 등〉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16호)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1호)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62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4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21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16호)	1
2.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1호)	1
3.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62호)	1
4.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4호)	1
5.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21호)	2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16호)	2
2.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1호)	3
3.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62호)	5
4.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4호)	5
5.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21호)	8
III . 개정안 관련 21대 국회 심사 경과	9

IV. 5건의 개정안 비교	10
----------------------	----

V. 검토의견	3
---------------	---

1. 농어업재해의 정의 변경	12
2.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포함 사항 추가 등	17
3. 심의회 심의사항에 보험료율 산정방법 추가 및 이에 따른 보험 료율의 산정	25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구성 기준 변경	32
5. 보험목적물 범위에 대한 재검토 연례화	35
6. 심의회 의결을 통한 보상범위 결정 및 보험 미가입 농·어가에 대 한 보상 대책 마련	38
7. 보험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42
8. 보험사업자의 가입자 확대 노력 및 보험상품 안내 의무 신설	45
9. 보험사업자의 보험요율의 부당 상승 방지 노력 의무화	48
10. 손해평가인의 교육 내용 구체화 및 손해평가인력의 품목 전문 성 제고	51
11. 손해평가 결과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 교체 요 구 수용 근거 마련	55
12.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 명문화 및 지원항목 추가 등	58
13.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명확화	68

I. 제안경위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16호)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6. 4.

다. 회 부 일 : 2024. 6. 11.

2.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1호)

가. 제 안 자 : 박수현의원 등 28인

나. 제 안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00.

3.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62호)

가.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20인

나. 제 안 일 : 2024. 7. 22.

다. 회 부 일 : 2024. 7. 00.

4.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4호)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7. 22.

다. 회 부 일 : 2024. 7. 00.

5.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21호)

가.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7. 23.

다. 회 부 일 : 2024.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16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가 및 어가의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불가피한 사유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하도록 하며,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가 및 어가가 경영위기

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
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
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시범사업에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7조제1항).

2.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1호)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
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
의 경우 가입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

도 있음.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재해의 빈번함에 비해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에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국가는 농어업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3.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6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4.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14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7조의2, 제8조의2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 신설 등).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2조의2).

나.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을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제3의2호 신설).

다. 재해보험 등의 심의 대상에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3제3호).

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으로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당해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마.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바.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사.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아.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함(안 제8조의2 신설).

자.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제11조의8 후단 신설).

차. 보험료를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있도록 함(안 제19조).

5.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2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를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제1항).

Ⅲ. 개정안 관련 21대 국회 심사 경과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개정안과 관련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심사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21대 심사 경과 > —

-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6건* 발의
*서삼석의원('20.6월), 홍문표의원('20.9월), 정희용의원('21.3월), 김수흥의원('22.1월),이원택·안호영의원('23.8).
- 총 3차례 농해수위 법안 소위(' 23.8.16 · 17, ' 23.12.20)에서 6건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
 -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 농업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문함.
- 제21대 국회 임기만료('24.5.29.)로 폐기

IV. 5건의 개정안 비교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윤준병의원 (‘24.6.4.)	박수현의원 (‘24.7.19.)	서삼석의원 (‘24.7.22.)	이원택의원 (‘24.7.22.)	여기구의원 (‘24.7.23.)
재해의 정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농어업재해’ 정의에 일조량 부족 추가
기본 계획 수립	수립 주기		2년		3년	
	포함 사항		· 품목수 형평성 고려 · 산림청장 건의 사항		보험 미대상 품목의 상품개발 사항	
	국회 보고		소관 상임위 보고			
심 의 회	심의 사항				손해 평가 방법 (피해율, 보험료율 산정 포함)	
	보험료율 산정방식				보험사업자 보험료율 산정 시 심의한 산정방식에 따름	
	구성 변경				농림축산업 단체대표 또는 단체 추천인이 전체 1/3 이상	
보험목적물 재검토		매년 목적물 재검토			매년 목적물 범위 재검토	
보상	보상 범위				심의회 의결로 결정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보험 미가입 농어가 피해보상 대책 마련	보험 미가입 농어가 피해보상 대책 마련		보험 미가입 농어가 피해보상 대책 마련	
교육 의무 이수자 보험료 감면					· 보험가입자 교육 의무화 · 교육이수자 보험료 감면 · 보험료 감면 예산 지원	
사 업 자 의 무	가입 확대 노력				· 가입자 확대 노력 · 보험상품 안내 의무화	
	보험료율 상승방지					부당한 보험료 율 상승 방지 노력 의무
손해 평가	손해평 가인 교육				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내용 교육	
	이의 신청				이의신청 시 손해평가사 교체 요구 가능	
	전문성				손해평가인력 품목 전문성 제고	

구분		윤준병의원 (‘24.6.4.)	박수현의원 (‘24.7.19.)	서삼석의원 (‘24.7.22.)	이원택의원 (‘24.7.22.)	여기구의원 (‘24.7.23.)
보험료 지원 명목	지원 비율	정부 70%, 지자체 20% 가능	정부 80% 의무			정부 80%, 지자체 10% 의무
	지원 항목			요건충족 가입자 보 험료 80% 이상 의 무 지원	행정구역·권역 단위 누적 손 해액 경감비용 일부 지원 가능	
신규 보험상품 개발		신규 보험상품 개발 시 시범사업 근거 명확화				

1. 농어업재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항)

여기구의원안은 농어업재해의 정의에 ‘일조량 부족’을 추가 규정함.

– 12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1) 이원택의원안 관련

개정안보다 현행법이 '농어업재해'를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즉, 이 법에서는 농어업재해에 질병과 화재를 포함하고 있으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는 질병과 화재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 적용 시 가축 질병과 화재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어기구의원안 관련

'일조량 부족'은 이미 자연재해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없음.

나. 검토의견

이 법은 '농업재해'¹⁾를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어업재해대책법」²⁾은 '농업재해'를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일조량

1) 어업재해도 같은 체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농업재해'를 중심으로 살펴봄.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부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 비교]

「농어업재해대책법」 상 농업재해(제2조제2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상 농업재해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일조량 부족	자연재해
기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병충해
유해야생동물	조수해(鳥獸害)
-	질병 또는 화재

이원택·어기구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이 법상의 농업재해의 정의에 자연재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³⁾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이원택의원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자연재해를 일일이 열거하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도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정의 규정을 이 법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이고, 어기구의원안은 ‘일조량 부족’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 이를 정의 규정에 명시하고 있음.

3) 최근 3년 농업 피해 발생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되며, 노지작물의 경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타재해 피해와 동일하게 보상하고 있음.

다만, 노지에 비해 재배 환경 관리가 용이한 시설작물은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일조량 부족 피해의 경우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각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이원택의원안과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의 정의에는 이 법상 농업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화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원택의원안에 따를 경우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질병 또는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다음으로, 어기구의원안은 농업재해의 정의에 기상현상을 의미하는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와 병렬적으로 추가 규정하고 있어 ‘일조량 부족’을 자연재해의 한 종류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재해와는 다른 범위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일조량 부족’이 자연재해의 한 종류인 경우 많은 자연재해 중 ‘일조량 부족’만을 정의 조항에 명시하는 것은 자연재해의 종류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지 않은 현행 규정 체계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농식품부에서 현재 일조량 부족 관련 상품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⁴⁾ 중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원택·어기구의원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해주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선에서 농어업재해를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농작물재해보험 일조량 부족 피해 관련 개선방안 연구('24.5~'24.10)

2.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포함 사항 추가 등(안 제2조의2제1항, 제2항제3호 후단 신설, 제2항제5호, 제6항 신설)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박수현의원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상 재해보험 대상 품목 결정 시 농작물, 임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하며, 기본계획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원택의원안은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박수현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 ----- -----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 ----- ----- ----- ----- ----- -----

현행	박수현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보험 발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 (생략)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후단 신설> <신설> 4. (생략)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신설>	----- ----- -----2년마다----- -----.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이 -----경우 재해보험의 대 -----상 품목은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 -----련한 형평성을 고려 -----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5. ----- ----- ----- -----인 -----정하는 사항(산림청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건의 -----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3년마다----- -----.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의2.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단축 시 잦은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한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변화하는 재해 양상에 따라 정책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임.

② 기본계획 포함 사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이원택의원안은 입법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품개발을 새로운 품목에만 한정하는 것보다 기존 대상 품목도 포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⁵⁾.

다만, 박수현의원안과 같이 보험 대상 품목 선정 시 농작물, 임산물 등의 수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산림청장의 건의사항은 내부 검토 사항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기본계획 수립 국회 보고는 타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용 가능함.

5) 즉,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에서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품목’은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기본 단위이고, 상품은 보험목적물(품목) 내에서 품종, 작형, 용도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 수확량, 용도 등 차이가 존재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판매하는 단위를 의미함.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상품(예시) >

품목 상품	배추				옥수수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월동배추	일반	조사료용

나. 검토의견

1)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단축

박수현·이원택의원안에서 그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각각 2년 및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은,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적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농식품부 소관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 16개 중 15개의 수립 주기가 5년(1건은 미정)이고 타 부처 소관 법률에서 대부분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도 일부⁶⁾ 존재함.

[농식품부 소관 법률상 기본계획 수립 주기 현황]

근거조항	계획명	수립 주기
「밀산업육성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밀산업육성 기본계획	5년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5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5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5년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근거조항	계획명	수립 주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의 수립)	공익직접지불제도 기본계획	5년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5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
농어업인삶의질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5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5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5년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5년
「외식산업진흥법」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5년
「전통주산업법」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5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5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5년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현행대로 5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식품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을 통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기본계획 포함 사항 등

현재 이 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보험상품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품목수 73개: 농작물 65개, 임산물 8개), 가축의 폐사 및 자연재해로 인한 축사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축종수: 16개)으로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함.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현황]

연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2001	사과, 배	소('97), 돼지, 말('00)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닭
2003		
2004		오리
2005		꿩, 메추리
2006	뽕은감	칠면조, 사슴
2007	밤, 참다래, 자두	거위, 타조
2008	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투박)	양
2009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10	시설투박,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벌, 토끼
2011	시설투박(꽃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관상조
2012	인삼, 시설투박(멜론, 파프리카), 오디, 녹차	오소리
2013	시설투박(부추, 시금치, 상추), 버섯(표고, 느타리)	-
2014	시설투박(배추, 가지, 파)	-
2015	시설투박(무, 백합, 카네이션)	-
2016	양배추, 밀, 시설투박미나리, 오미자	-
2017	시설투박쑥갓, 무화과, 유자	-
2018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
2019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
2020	팔,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2023	양상추, 시설투박 봄감자, 귀리	
2024	수박, 블루베리, 두릅	
합계	73	16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원택의원안은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험상품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상품개발을 재해보험의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한정하기보다는 현재 대상 품목도 포함하는 것이 보험상품 상품개발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임.

한편, 박수현의원안에서 재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대상 품목 선정 시에 농작물과 임산물 등의 수적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등에 있어 산림청이 소관하는 임산물에 관한 사항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보험 품목 선정 시에는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재배농가 수, 재배면적 및 생산액, 가격 통계 보유 여부 등 보험화 최소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농작물 및 임산물의 수적 형평성 고려 시 보험화가 어려운 임산물 품목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산림청은 「정부조직법」 상⁷⁾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기관 내부 검토사항인 산림청장의 건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7) 「정부조직법」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④ (생략)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3)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⁸⁾ 등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⁹⁾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에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9) 농식품부가 기본계획 등을 공문으로 상임위원회에 보내면 해당 공문을 접수하여 의원실에 공람게시하는 방법으로 보고와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심의회 심의사항에 보험료를 산정방법 추가 및 이에 따른 보험료율의 산정(제2조의3제3호, 안 제9조제1항)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는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재해의 범위,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원택의원안은 손해평가의 방법에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심의회에서 심의한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이원택의원안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 ----- ----- ----- ----- ----- ----- ---
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
3. <u>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u>	3. <u>손해평가 방법(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과 보험료율의 산정을 포함한다)</u>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현 행	이원택의원안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재해보험사업자----- ----- ----- ----- 심의회에서 심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가. 관계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심의회에서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을 포함한 손해평가의 방법을 심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험업법」에서 보험료율 산정 원칙¹⁰⁾을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율 산정방식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계리적·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료율 산정방식을 심의회가 직접 심의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심의기관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

10)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심의회 역시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심의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심의회의 결정사항이 보험사업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2) 기획재정부

보험료율은 현재 「보험업법」에 따라 산정되고 있고, 보험료율 산정방법 변경은 소요예산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재보험 기금 운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검토의견

이원택의원안은 심의회의 심의대상인 손해평가의 방법에 ‘농어업재해에 따른 피해율 산정’과 ‘보험료율 산정’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심의회에서 심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보험료율¹¹⁾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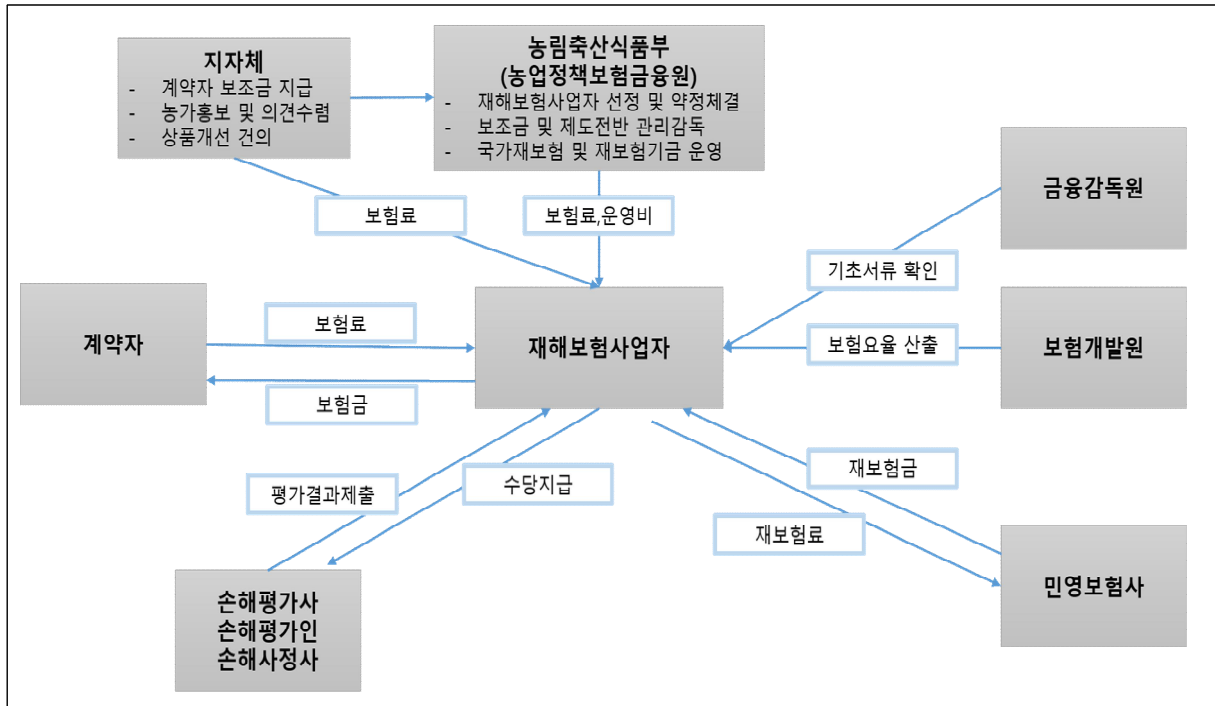
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에 따른 피해율 산정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임의적으로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 해당 사항을 심의회가 심의하도록 의무화하여 농어업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과 관련하

11) 이 법에서는 보험료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요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보험료율을 사용하되, 「보험업법」인용 시에는 보험요율을 사용함.

여 상품준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절차도]



※ 자료: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1, 농식품부) 재구성

먼저, 상품준비단계로 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함), 지자체, 보험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 등은 신규품목 도입 및 기 운영 중인 품목의 상품개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율을 산출하면 금융감독원이 수리함.

상품판매단계에서는 농협손보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농업인 등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보험료를 지원함.

이후 재해발생 시에 계약자가 사고를 접수하면 농협손보에서 구성

한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피해율이 산정되고 농협손보에서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보험금을 확정·지급함.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단계에서 재보험 정산단계에서 농식품부, 농협손보, 민영재보험사 등이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을 정산함.

개정안과 관련하여 먼저, 손해평가의 방법에 ‘재해에 따른 피해율’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은 손해평가의 결과로 피해율¹²⁾이 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손해평가의 방법에 ‘보험료를 산정’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 운영체계에 있어 보험료를 산정과 손해평가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손해평가의 방법에 보험료를 산정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둘째, 현재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금융당국에 의한 규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어 보임.

즉, 보험료를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12) 산출기준은 품목마다 별도 규정하고 일례로 수확감소보장 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율이 측정됨.

○ 수확감소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① - 자기부담비율②)

①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직전 5개년 수확량의 평균

** 미보상감수량: 보상하지 않는 손해, 농가의 농업활동 미비 등으로 발생한 수확감소량

② 자기부담비율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로, 가입 시 농가가 선택(10·15·20·30·40%형)

전제로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규정(제129조)하고,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제176조제1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에서 보험요율을 산출한 후 금융위원회¹³⁾에 신고하면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리(제127조제2항 및 제4항)하는 한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자료 제출 및 검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제179조)을 마련하고 있음.

[「보험업법」상 보험료 산출 관련 규정]

조항	내용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¹⁴⁾	보험회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보요율 산출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¹⁵⁾	보험회사: 보험요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 설립 가능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¹⁶⁾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작성 후 금융위에 신고 금융위: 내용 검토 및 「보험업법」에 적합 시 신고 수리
제179조(감독) ¹⁷⁾	금융위: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에 명령권,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권한 행사

13) 「보험업법」 제19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라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기초서류 작성·변경 신고 수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수행 중임.

14)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후략>

15)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6)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보험회사는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셋째, 심의회는 현재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고위공무원 7인과 재해보험 또는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4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계리적·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는 보험연구나 보험계리 분야 인사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심의회가 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심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임.

[심의회의 구성]

합계	당연직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보험연구, 보험계리, 작물, 의학, 재보험 등)	농업계 대표	보험사업자, 보험사업관리기관	학계	시민단체
21명	7명	각 1명	3명	3명	2명	1명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7) **제179조(감독)**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금융위원회의 명령권)·제133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및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를 준용한다.

4.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구성 기준 변경(안 제3조제4항 및 제4항제4호)

현행법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으로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원택의원안은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뿐 아니라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심의회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이원택의원안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생략)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 ----- ----- ----- ----- ----- 포함되어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u>	4. <u>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당해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심의회는 농어업재해보험뿐 아니라 농업인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 포함) 관련 사항까지 함께 심의¹⁸⁾하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농업단체의 대표 등만으로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구성하기 어려움¹⁹⁾.

나. 검토의견

현재 심의회 위원은 관계부처 등 당연직 7명, 분야별 전문가(보험연구, 보험계리, 작물, 의학, 재보험 등) 5명, 농림축산업인단체 3명, 보험사업자·사업관리기관 3명, 학계 2명, 시민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회의 구성]

합계	당연직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보험연구, 보험계리, 작물, 의학, 재보험 등)	농업계 대표	보험사업자, 보험사업관리기관	학계	시민단체
현행	7명	각 1명	3명	3명	2명	1명
개정안			7명 이상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원택의원안은 심의회 전체 위원 21명 중 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7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재해보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농업인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1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후략)

19)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개정 취지를 고려해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정한 제3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업인단체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다만, 심의회의 위원수를 21명 이내로 고정된 채 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위원수 축소가 불가피함.

이에 다른 분야의 위원수 축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분야별 적정 위원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보험목적물 범위에 대한 재검토 연례화(안 제5조제2항)

현행법은 정부에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윤준병·이원택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실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략)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② -----매년 보험목적물을 재검토하고, 보험목적물----- -----.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② -----매년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보험목적물----- -----.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현행법에서 이미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는 그 범위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중복 규정할 필요는 없음²⁰⁾.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27년까지 보험목적물(대상 품목)을 현행 73개에서 80개로 매년 확대할 계획²¹⁾으로, 이를 위해 2년마다 지자체 수요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신규 도입 품목을 선정 중임.

20)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여 정부에 지속적인 보험목적물 확대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함.

21) 품목 확대 계획(국정과제 72-3): ('24) 73 → ('25) 76 → ('26) 78 → ('27) 8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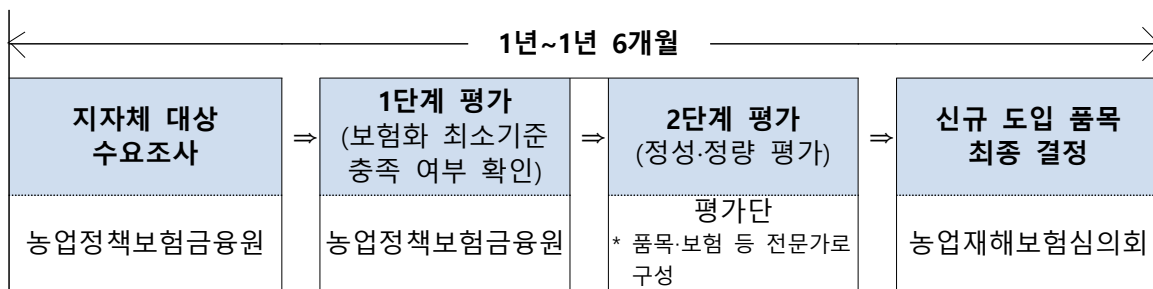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현재 농식품부는 보험목적물의 품목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임.

윤준병·이원택의원안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도록 할 경우 정부의 보험목적물 확대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목적물의 확대를 위하여 2년마다 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신규 도입 품목을 최종 결정하고 있음.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도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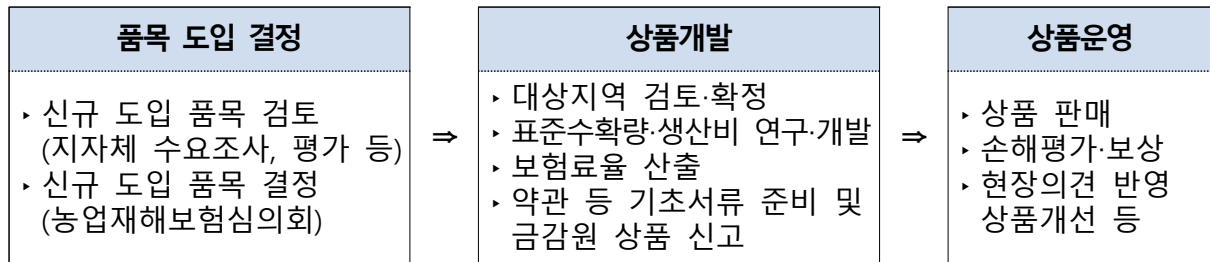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그런데 신규 도입이 결정된 품목을 실제 보험상품으로 출시하기까지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재검토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즉, 보험상품으로서 ① 특정 품목의 도입이 결정되면 ②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지역 검토·확정, 표준수확량 개발, 보험료율 산정 등 상품 개발을 선행한 후 ③ 일부지역에 상품을 판매하고 사고접수 시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상품 운영의 과정을 거쳐 ④ 품목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개발 절차]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6. 심의회 의결을 통한 보상범위 결정 및 보험 미가입 농·어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현행법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원택의원안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윤준병·박수현·이원택의원안은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윤준병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 ----- <u>제2조의3제1호에 의한 심의 결과에 따라</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	③ 국가는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	③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

현행	윤준병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이원택의원안
	<u>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농가 및 어가가 같은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가. 관련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 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현행 기준 유지가 바람직하며,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이 법에 의무화하는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기획재정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할 경우 보상하는 재해의 잦은 변경이 예상되며, 그로 인한

정부 소요예산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검토의견

윤준병·박수현·이원택의원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도 받지 못하는 농어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먼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시행령 및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규정」(농식품부고시)²²⁾을 통해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원택의원안에 따라 심의회에서 그 범위를 정하도록 할 경우 심의회 결과에 따라 그 범위의 변동성이 커짐.

이는 보상 재해 범위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켜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보험상품은 해당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 해당 위험의 수준을 기반으로 산출한 보험료율(보험료)²³⁾,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절

22) 시행령 제8조상 별표1과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참고자료4 참조

차 및 수준 등을 보험약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 즉 재해의 범위가 보험계약 전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율 산출이 불가능해 보험상품 판매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다음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한 농어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은 보험상품을 통한 보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이 법의 목적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임.

23) 개별 계약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목적물 경제적 가치(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계약자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산출됨.

7. 보험가입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 (안 제7조의2 신설)

개정안은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이수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이원택의원안
<신 설>	<u>제7조의2(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대책 교육 등) ①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②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을 이수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u> <u>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감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④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재해대책 교육 의무화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은 교육 이수와 재해위험도 저하 간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능하여 적용이 곤란함.

다만, 현행법 제28조²⁴⁾에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새로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이 조항을 의무 규정화할 수 있어 보임.

나. 검토의견

이원택의원안은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이수자에게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재해보험 교육 등 의무화**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제28조에서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기보다 농식품부의 의견과 같이 현행법 제28조를 의무 규정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다음으로, **교육 이수자 보험료 감면**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보험료 감면의 경우 그 감면 사유로 인하여 재해위험도(사고발생 확률)가 낮아진다는 인과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수치로 확인되어야 가능

24)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하나, 현재 교육 이수와 보험 가입 품목의 재해위험도 저하 간 인과관계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보험은 보험계약자로부터 거수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상등이 되어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²⁵⁾, 교육 이수 가입자에게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할인액에 대하여 다른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걷을 수밖에 없게 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재 방제시설 설치를 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재해예방 노력에 따른 피해 저감효과를 반영하여 농가당 3~30%²⁶⁾까지 할인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²⁷⁾에 따라 가입자가 재해예방 교육을 받고 농작업을 할 경우 사고 발생 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음.

25)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이란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합계액과 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동일하도록 보험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보험료 산정 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임.

26) 방풍망 5~10%, 미세살수장치 10~20%, 방상팬 10~20%, 지주시설 7~15% 등(여러 개의 방제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대 30%)

27) 제7조(보험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8. 보험사업자의 가입자 확대 노력 및 보험상품 안내 의무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개정안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행	이원택의원안
<신 설>	제8조의2(보험사업자의 의무)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농어업재해보험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가입자 확대 노력은 이 법 제28조의2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촉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에서는 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충실한 보험상품 안내 의무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적음.

나. 검토의견

대표적 농어업재해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²⁸⁾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52.0%를 기록함.

[최근 1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6.1	21.5	27.4	29.7	32.9	38.8	45.0	49.4	49.9	52.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실히 하여 가입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가입자 확대 노력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제28조의2²⁹⁾에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이미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상품에 대한 충실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7조 및 제69조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한 제재처분 규정(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의 과징금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을 두고 있는바, 이

28) 가입률 측정산식: (보험 가입면적/보험 대상면적*) × 100

* 대상 품목별로 보험 운영 지역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면적

29)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에 동일 사항을 규정할 경우 두 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 4) 위험보장의 범위<후략>

제57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9.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율의 부담 상승 방지 노력 의무화(안 제9조 제3항 신설)

여기구의원안은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단위 및 권역 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담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여기구의원안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① 제8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다만,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② (생략) <신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제

현행	여기구의원안
	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보험가입자의 부당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보험료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이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산출한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법」에 적합 시 수리하므로 부당하게 책정되기 어려운 구조임.

현행법에서 재해보험 요율 산정 단위를 시·군 등으로 정하고 있어 시·군 등의 기본요율이 인상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 상승으로 보기 어려움.

나. 검토의견

여기구의원안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상승 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재해보험 요율 산정 단위를 시·군 등 행정구역 단위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해당 시·군 등의 기본요율 인상으로 인한 개별 농어가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즉, 현행법은 보험료율 산출 시 대수(大數)의 법칙³⁰⁾ 및 통계신뢰도

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는 기본단위로서 시·군 등을 동일한 재해위험도를 갖는 집단으로 정하고 있고, 통계가 충분한 일부 품목은 읍·면·동 단위로도 보험료율을 산출 중임.

또한, 현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우량농가 및 손해율이 낮은 농가 등에 보험료 상승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가입 농가의 과거 5개년 누적손해율(보험금/보험료)에 따른 할인·할증과 방재시설 설치 할인 등을 반영하여 가입 농가별 최종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음.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평가기간 누적손해율	1년	2년	3년	4년	5년
30%미만	-8%	-13%	-18%	-25%	-30%
30%이상 60%미만	-5%	-8%	-13%	-18%	-25%
60%이상 80%미만	-4%	-5%	-8%	-13%	-18%
80%이상 120%미만	-	-	-	-	-
120%이상 150%미만	3%	5%	7%	8%	13%
150%이상 200%미만	5%	7%	8%	13%	17%
200%이상 300%미만	7%	8%	13%	17%	25%
300%이상 400%미만	8%	13%	17%	25%	33%
400%이상 500%미만	13%	17%	25%	33%	42%
500%이상	17%	25%	33%	42%	5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 개별 농가 최종 보험료 >

보험료=보험가입금액×시군 기본보험료율×개인별 할인·할증률×방재시설 할인율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개별 농어가의 보험료율 인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산정단위와 할인·할증제도 변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30)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적이나 대규모 또는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함.

10. 손해평가인의 교육 내용 구체화 및 손해평가인력의 품목 전문성 제고(안 제11조제5항 및 안 제25조의2제1항제4호)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원택의원안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 내용에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농식품부장관등의 수행 업무에 손해평가인력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이원택의원안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생략)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손해평가인</u>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u>손해평가를</u>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 ----- <u>손해평가인의</u> ----- -- <u>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u> ----- <u>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의 내용으로</u>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현행	이원택의원안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손해평가인을 포함한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내용의 구체화 필요성에 동의함.

다만,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 ‘수량’은 교육내용이 모호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이 법에 따른 손해평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한 ① 손해평가인(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농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손해평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② 손해평가사,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③ 손해사정사 등이 담당하고 있음³¹⁾.

3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후략>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 ① 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등록,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와 실무수습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후략>

[손해평가 업무 수행 주체별 비교]

구분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
법적근거	「재해보험법」 제11조2	「보험업법」 제186조	「재해보험법」 제11조
자격요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보험개발원이 위탁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	「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보험사업자가 위촉한 자
소속기관	평가사협회, 손사법인 등	보험회사, 손사법인 등	평가사협회, 지역농협 등
선발인원	제한없음	연간 50명 (재물손해사정사 한정)	제한없음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현재 손해평가인은 32)연 1회 이상 정기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재해보험 종류별 약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등임.

최근 현장에서는 손해평가인력(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인)의 농업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가에서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조사 및 재평가를 요청하기도 함.

이에 개정안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고 농식품부장관 등이 손해평가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손해평가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농어업인이 재해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3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식품부의 의견과 같이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 내용에서 품목의 품종이나 재배방식과 달리 품목의 ‘수량’ 자체는 교육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품목의 수량 측정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교육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 경우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55 –

다만, 입법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 평가를 담당했던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나. 검토의견

실제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정도의 재해 피해가 여러 농가에 발생했으나 손해평가인력에 따라 농가별 피해율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매년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요청하는 건수가 1,000건 이상임.

[연도별 재평가 추진 현황('21~'23)]

구분	'21	'22	'23
요청건수	1,815	1,246	1,150
재평가건수	1,815	1,246	1,15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원택의원안은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청 시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한 손해평가를 담보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현재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기존 손해평가사 등은 재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험가입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기존 담당 손해평가사 등의 의무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요령]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2.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3. <생략>

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12.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 명문화 및 지원항목 추가 등(안 제19조)

현행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윤준병의원안은 정부가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20% 이상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박수현의원안은 정부가 80% 이상 의무 지원하도록 하며,

여기구의원안은 정부가 80%이상, 지방자치단체가 1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이원택의원안은 정부가 보험료를 산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 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	제19조(재정지원) ① --- ----- ----- ----- ----- ----- -----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19조(재정지원) ① --- ----- ----- ----- ----- ----- -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19조(재정지원) ① --- ----- ----- ----- ----- -----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19조(재정지원) ① --- ----- ----- ----- ----- ----- ----- -----

[illegible]

또한, 서삼석의원안은 농어업 형태나 농어업 전체의 경영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전년도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서삼석의원안
제19조(재정지원) ① (생략) <u><신설></u>	제19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보험가입자 또는 전년도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 보다 많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보험가입자의 농어업 형태나 농어업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것 2. 농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생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할 것 3. 농어촌에 거주해야 할 것 4. 직전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③·④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 ----- 지원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방법 및 절차 -----.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u>지원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계 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① 보험료 지원비율 명문화는 지자체 보조를 정부 보조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 농가의 보험료 부담률 저하 효과가 낮으며, 타 정책보험 지원비율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현행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② 보험료율 산정 기본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 비용 지원은 정부 지원을 통해 손해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재해위험도에 비례하여 보험료율을 산정함으로써 보험료율이 계약자 간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보험료율 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³³⁾.

2) 기획재정부

① 보험료 지원비율 명문화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과 국고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충돌되고, 타 정책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비율 등 형평성 고려 시 국가 지원비율 상향은 곤란하며, 지원비율 상향 시 가입률이 현재 50% 수준에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³⁴⁾가 있음.

33) 현재 보험료율은 통상 시·군 단위로 산정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보험가입 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손해율 등이 고려되어 산정되어 그 지역에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료 대비 많을수록 손해율이 증가하고 보험료율도 증가함.

34)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원비율 70% 가정 시 5년간('25~'29년) 추가재정소요가 약 1조 5,767억원 발생함.

② 보험료를 산정 기본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정부가 운영에 관여하는 여러 정책보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움.

3) 법무부

정책 보험료 지원 등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수혜적 성격의 특성상 사회환경 변화, 예산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일반적으로 구체적 지원 규모나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개정안과 같이 재정 지원의 범위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³⁵⁾인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자기부담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여 보험료 납입 부담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거나 혹은 보험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높음.

나. 검토의견

1)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 명문화

각 개정안은 정부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을 70~80%,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 10~20%로 각각 다르게 규정³⁶⁾하고 있음.

35) 다른 입법례에서도 지원 범위와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5 참조

36) 서삼석의원안은 농어업 형태나 농어업 전체의 경영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전년도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

[각 개정안에 따른 의무 지원 비율]

구분	윤준병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여기구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정부	7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이상
지자체	20% 이상	-	10% 이상	-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지침인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³⁷⁾에서 정부의 50%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34~45%를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평균 1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3)]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34~45%	86~95%	5~16%(평균 12.5%)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부담 비율은 정부가 50%, 지자체가 0~50%로, 자부담은 평균 21%로 나타나고 있음.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3)]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0~50%	50~100%	0~50%(평균21.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37)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Ⅱ. 주요내용

3. 지원내용

○ 농작물재해보험 순보험료: 50% 보조

농어업재해보험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현재 52% 수준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각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부는 기존 50%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높여 70~80%까지 지원하게 되는 반면 지자체의 평균 부담 비율이 현행 37.5%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농어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은 윤준병·여기구의원안에 따를 경우 10% 이하로 감소하게 됨.

이에 따르면 보험료의 20%까지 자부담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평균 자부담 비율이 12.5%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가입자 전반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에 5,22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비 부담은 1조 545억원 감소하는 대신 국비 부담이 1조 5,7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둘째,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의 자부담 비율 설정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윤준병·여기구의원안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비율이 1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농어가 등의 재해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셋째, 보험료 지원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³⁸⁾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보험에 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하여 규정해온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 지원 비율과 법률상 명시 여부에 대해서는 타 정책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정책보험별 보험료 지원 현황 비교]

정책보험	보험료 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 계	
농작물재해보험	50%	25~50%	75~100%	0~25%
농어업인안전보험 ³⁹⁾	50%	20~40%	70~90%	10~30%
풍수해보험 ⁴⁰⁾	40.4~67.13%	9~20.4%	50~86.25%	13.75~50%
어선·어선원재해보험 ⁴¹⁾	15~71%	0~25%	15~96%	6~85%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3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 일반·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별 차등 지원

- (일반) 50%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70%

40)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근거, 일반·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별 차등 지원

넷째,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현재 평균 자부담 비율(21%)은 농작물 재해보험보다 높으나, 2023년 기준 가입률은 94.4%로 추가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보험료율 산정 기본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 비용 지원

농작물재해와 관련하여 2023년 기준 17개 전국 시도별 누적손해율⁴²⁾을 살펴보면, 누적손해율은 평균 99.3%로 충북이 119.9%, 서울이 32.1로 나타나는 등 재해 발생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존재함.

[시도별 누적손해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9.3	32.1	61.7	94.0	109.4	75.1	89.5	87.4	87.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1.7	100.7	119.9	103.7	113.5	99.2	106.6	74.8	78.4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현재 보험료율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누적손해율(총보험금/총보험료)이 100%가 되도록 매년 조정되고 있음. 즉, 누적손해율이 100% 초과 시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100% 미만 시 보험료율이 인하되는 구조임.

구분	90%보상형	80%보상형	70%보상형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정부지원	40.4%(단체가입) 43.5%(개인가입)	48.75%	48.75%	59.25%	67.13%

4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근거, 어선규모(10톤, 20톤, 30톤, 50톤, 100톤) 별 차등 지원

구분	~10t	10t~20t	20~30t	30t~50t	50t~100t	100t~
어선(정부)	71%	63%		39%	31%	15%
어선원(정부)	71%	63%	15%			

42) 누적손해율 = ('01~'23년 보험금 합계/'01~'23년 보험료 합계) × 100

개정안은 누적손해율이 높은 시·군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해보험사가 과거 해당 지역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 재원으로 보전함으로써 누적손해율을 낮추고 이로 인해 보험료를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자연재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농어업인은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농어업인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정부 지원을 통해 누적손해액(누적보험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누적보험금(재해위험도)에 비례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도록 한 보험요율 산정의 기본원칙과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이로 인해 누적보험금에 비례한 보험료율 산정을 적용받고 있는 타 지역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⁴³⁾도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3)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후략>

13. 신규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명확화(안 제27조제1항)

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u>도입하려는</u>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시범사업) ① ----- ----- <u>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나. 검토의견

현재 본사업으로 55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18개 품목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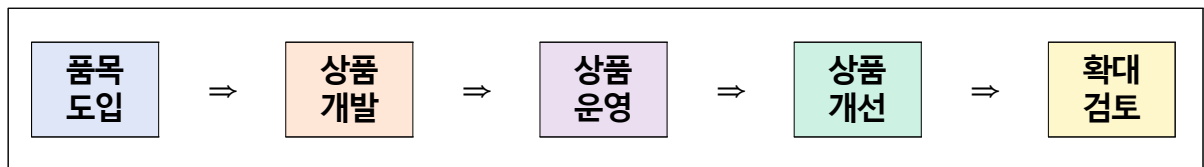
[농작물재해보험 본사업 및 시범사업 현황]

구분	품목
본사업	사과, 배, 단감, 감귤, 참다래,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벼, 밀, 감자, 고구마, 콩, 옥수수, 팥, 양파, 마늘, 배추(고랭지), 무(고랭지), 파, 보리, 시금치, 고추, 인삼, 뽕은감, 밤, 대추, 오미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가지, 파(대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시범사업	복분자, 오디, 차, 양배추,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배추(월동, 가을, 봄), 단호박, 무(월동, 가을), 당근, 파(쪽파, 실파), 호두, 살구, 귀리, 시설감자, 양상추, 블루베리, 두릅, 노지수박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보험상품의 개발은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바, 보험상품의 도입과 개발을 구분하여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으나, 시범사업의 목적에 ‘개발’을 명시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 보임.

[시범사업 단계]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재작성

문 의 처

02)6788-5415

참 고 자 료

참고 1

최근 2년 농업재해 발생현황

□ 2024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대설·한파 (1.22.~24.)	제주지역 대설·한파로 월동채소 언피해,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07호	■ 농작물 732.9ha * 월동무 714.1, 브로콜리 3.8, 배추 2.7, 양배추 2.6 등 ■ 가축폐사 말 6마리, 꿀벌 5,158군 ■ 농업시설 0.03ha(축사)
호우 (2.18.~20.)	전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맥류, 채소류 침수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69호	■ 농작물 2,147.3ha * 보리 1,170.6, 귀리 459.9, 밀 203.9, 양파 103.6 등
대설 (2.20.~22.)	강원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파손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10호	■ 농업시설 9.6ha * 인삼시설 5.9, 비닐하우스 2.9, 과수시설 0.5 등
일조량 부족 (‘23.12월~’24.2월)	겨울철 잦은 강우 등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12개 사·도(경북, 경남, 전남, 충남, 전북, 제주, 광주, 충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에서 농작물 생육불량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0,022호	■ 농작물 9,606.2ha * 딸기 2,521.3, 참외 1,990.8, 수박 852.8, 방울토마토 549.7, 토마토 530.7, 고추 438.3, 애호박 352.3 등

* 5월 호우·우박, 마늘 이차생장 등 현재 복구계획 수립 중이며, 7월 호우는 피해조사 진행중

□ 2023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한파 (1.24.~28.)	제주지역 한파로 월동채소 등 언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055호	■ 농작물 4,704ha * 월동무 3,510, 양배추 291, 브로콜리 270, 콜라비 122, 등 ■ 가축폐사 1,501마리*, 꿀벌 5,129군 * 닭 1,500마리, 말 1마리
대설	경남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과수시설 파손	■ 농업시설 30ha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2.9~10.)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1호	* 비닐하우스 1, 안삼시설 12, 과수시설 28 등 ■ 농작물 5.4ha * 복숭아 2.5, 블루베리 2.3, 체리 0.3, 딸기 0.2 등
이상저온 (3~4월)	4월 냉해로 14개 시·도(경북, 전남, 충북, 전북, 충남, 경남, 경기, 강원, 세종,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부산) 139개 시·군·구 과수 꽃눈 고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6,652호	■ 농작물 44,765ha * 사과 18,807, 배 6,427, 복숭아 5,332, 자두 3,342, 양파 2,433, 포도 1,537, 매실 1,032, 단감 405, 감자 335, 유자 312, 인삼 258, 고추 165 등
호우·강풍 (5.4~6. 및 5.28~30)	호우·강풍으로 5개 시·도(충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에서 농작물 침수, 도복, 잎·줄기 꺾임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8,119호	■ 농작물 8,057ha * 보리 2,749, 밀 1,511, 귀리 976, 기장 651, 메밀 565, 감자 453, 마늘 185, 단호박 182, 콩 110 등 ■ 꿀벌 7군 ■ 농경지 0.9ha
우박·강풍 (6.8~15)	7개 도(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남, 경기, 전남)에서 우박·호우·강풍으로 사과 흠집, 잎 파열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9,460호	■ 농작물 5,150ha * 사과 2,766, 복숭아 396, 고추 329, 자두 201, 포도 189, 배 129, 배추 115, 옥수수 99, 참깨 75, 담배 74, 수박 64, 감자 63, 콩 58, 오이 34 등 ■ 농업시설 1.5ha * 비닐하우스 02, 안삼시설 12, 축산 0.1 등 ■ 농경지 0.3ha
호우 (6.27~7.27) 및 태풍 카눈	16개 시·도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가축 폐사, 비닐하우스, 수리시설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7,078호	■ 농작물 71,416ha * 벼 37,317, 콩 14,661, 고추 1,949, 대파 1,891, 복숭아 1,616, 사과 1,333, 참깨 1,128, 수박 1,032, 옥수수 729, 상추 477, 감자 366, 멜론 268, 배 243, 단호박 228, 고구마 148, 토마토 98 등 ■ 농업시설 269ha * 비닐하우스 92, 양파시설 72, 과수시설 68, 안삼시설 31, 축산시설 5 등 ■ 가축폐사 913천마리*, 꿀벌 13천군, 기타 곤충 43천kg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 닭 852,808마리, 소 826, 돼지 3,867 등 ■ 농경지 1,490ha ■ 공공시설 243개소
호우 (9.15~17, 9.20~21) 및 우박 (10.14, 26)	7개 도(경남, 충남, 제주, 전남, 경북, 충 북, 강원)에서 호우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흠집, 벼 도 복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2,986호	■ 농작물 6,697ha * 단감 2,404, 사과 2,218, 벼 1,187, 채소류 673 등 ■ 농업시설 0.1ha ■ 농경지 1.5ha
우박(11.17)	제주에 우박이 내려 감귤 낙과·흠집, 쪽 파 꺾임 피해 * 피해 농가수: 145호	■ 농작물 43.9ha * 감귤 42.4, 쪽파 1.5
대설·한파 (12.20~22)	대설·한파로 인한 4개도(전남, 전북, 제주, 충남) 양파, 대파, 무 등 농작물 언피해 및 농업시설 파손 * 피해 농가수: 2,189호	■ 농작물 972.6ha * 양파 597.2, 대파 272.9, 무 70.2 등 ■ 농업시설 22.8ha * 비닐하우스 20.5, 축산시설 1.9, 과수시설 0.4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제출자료('24.8.14)

참고 2

재해의 범위

□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시행령 별표 1)

재해보험의 종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농식품부 고시 별표 1)

보험 종류	보험 목적물	구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비고
농작물 재해보험	벼	병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도열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충해	벼멸구, 먹노린재	
	감자	병충해	감자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고추	병충해	고추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병·해충	
	복숭아	병해	세균구멍병	
가축 재해보험	소·사슴·양 및 말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질병에는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난산·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 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저하로 인하여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
	돼지	질병	TGE, PED, Rota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꿀벌	질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단,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하는 재해 포함)	폐사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3

재정지원 입법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1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6조(재정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법무부